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20.12.8.)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목 차

◆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1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5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IV	2021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
V	검토결과(검토의견)	16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20-166
번호	20-165

2020. 12. 8.
전문위원 신준호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 나. 제 출 일 : 2020. 11. 13.
- 다. 회 부 일 : 2020. 11. 13.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1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된 마포구 전체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29% 증가된 총7,35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32.06%로 전년대비 0.45% 높아졌으며, 재정자주도²⁾는 48.67%로 전년대비 0.09% 낮아졌음.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 일반회계는 6,516억원으로 전년대비 7.71% 증가함.
- 특별회계는 841억원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55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이 감소함

가. 2021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1 예산액	2020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35,856,683	685,830,634	50,026,049	7.29%
일반회계	651,662,670	604,989,875	46,672,795	7.71%
특별회계	84,194,013	80,840,759	3,353,254	4.15%
의료급여기금	485,200	480,690	4,510	0.94%
마포농수산물시장	7,503,649	7,566,726	△63,077	△0.83%
주차장	68,377,699	64,753,027	3,624,672	5.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77,465	6,996,191	△418,726	△5.99%
건축안전	1,250,000	500,000	750,000	150.00%

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	증 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55,010,052	13,001,982	25,058,326	67,066,396	△12,056,344
1 재난관리기금	1,900,519	1,138,364	601,324	1,363,479	537,040
2 남북교류협력기금	427,819	106,499	100,000	421,320	6,499
3 중소기업육성기금	1,264,547	2,675,368	4,500,420	3,089,599	△1,825,052
4 자활기금	1,695,445	40,000	77,315	1,732,760	△37,315
5 노인복지기금	1,314,178	26,298	26,000	1,313,880	298
6 양성평등기금	2,146,279	40,000	40,000	2,146,279	0
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95,365	54,389	30,420	871,396	23,969
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21,022	51,125	178,825	1,048,722	△127,700
9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7,388,589	3,056,494	1,872,227	6,204,322	1,184,267
10 옥외광고발전기금	1,162,587	418,000	757,800	1,502,387	△339,800
11 도로굴착복구기금	1,468,002	801,770	1,103,540	1,769,772	△301,770
12 식품진흥기금	2,413,677	346,466	612,125	2,679,336	△265,659
1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148,706	1,130,817	3,193,540	2,211,429	△2,062,723
14 공유재산관리기금	31,808,400	2,949,300	11,820,450	40,679,550	△8,871,150
15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54,917	167,092	144,340	32,165	22,752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51,662,670	604,989,875	46,672,795	7.71%
지방세수입	154,083,611	138,461,129	15,622,482	11.28%
세외수입	54,824,865	52,770,252	2,054,613	3.89%
지방교부세	17,047,000	11,817,000	5,230,000	44.26%
조정교부금등	91,192,869	91,921,997	△729,128	△0.79%
보조금	288,708,385	266,563,497	22,144,888	8.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805,940	43,456,000	2,349,940	5.41%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84,194,013	100%	80,840,759	100%	3,353,254	4.15%
세외수입	24,790,092	29.44%	23,543,544	29.12%	1,246,548	5.29%
경상적세외수입	17,218,806	20.45%	16,741,073	20.71%	477,733	2.85%
임시적세외수입	3,097,686	3.68%	3,088,871	3.82%	8,815	0.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73,600	5.31%	3,713,600	4.59%	760,000	20.47%
보조금	699,300	0.83%	1,340,790	1.66%	△641,490	△47.84%
국고보조금등	456,700	0.54%	1,100,445	1.36%	△643,745	△58.50%
시·도비보조금등	242,600	0.29%	240,345	0.30%	2,255	0.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704,621	69.73%	55,956,425	69.22%	2,748,196	4.91%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로 전년 대비 11.28% 증가된 1,540억8,361만1천원이고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44.26% 증가된 170억4,700만원임.
- 아울러, 보조금은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8.31%증가된 2,887억838만5천원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이 2.85% 증가로 172억1,880만6천원이고 특히, 이행강제금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전년대비 20.47%증가된 44억7,360만원으로 총 841억9,401만3천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51,662,670	100%	604,989,875	100%	46,672,795	7.71%
인건비	108,076,202	16.58%	105,679,347	17.47%	2,396,855	2.27%
물건비	44,404,440	6.81%	42,942,467	7.10%	1,461,973	3.40%
경상이전	438,784,529	67.33%	410,464,192	67.85%	28,320,337	6.90%
자본지출	51,756,217	7.94%	37,466,672	6.19%	14,289,545	38.14%
내부거래	2,517,919	0.39%	3,127,164	0.52%	△609,245	△19.48%
예비비및기타	6,123,363	0.94%	5,310,033	0.88%	813,330	15.32%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4,194,013	100%	80,840,759	100%	3,353,254	4.15%
인건비	3,078,628	3.66%	3,106,704	3.84%	△28,076	△0.90%
물건비	2,413,424	2.87%	3,307,482	4.09%	△894,058	△27.03%
경상이전	15,759,295	18.72%	14,575,672	18.03%	1,183,623	8.12%
자본지출	26,965,861	32.03%	2,534,459	3.14%	24,431,402	963.97%
융자및출자	500	0.00%	1,000	0.00%	△500	△50.00%
예비비및기타	35,976,305	42.73%	57,315,442	70.90%	△21,339,137	△37.23%

- 세출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다소 상승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적극 추진에 따라 대규모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이 크게 증가되었

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경상이전비가 세출에 대부분을 차지함.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2,656,069	10,676,009	1,980,060	18.55
일반회계	12,656,069	10,676,009	1,980,060	18.55
특별회계	해당없음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0,250,832	17,708,802	2,542,030	14.35
일반회계	20,250,832	17,708,802	2,542,030	14.35
특별회계	해당없음			

-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은 126억5,60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억7,600만9천원 대비 19억8,006만원, 18.55%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1.94%에 해당하며,
- 세출예산은 202억5,08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880만2천원 대비 25억4,203만원, 14.35%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2,656,069	10,676,009	1,980,060	18.55
세외수입	463,347	475,541	△12,194	△2.56
경상적세외수입	364,007	394,101	△30,094	△7.64
사용료수입	102,826	92,465	10,361	11.21
수수료수입	261,181	301,636	△40,455	△13.4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340	81,440	17,900	21.98
과징금	21,540	17,140	4,400	25.67
과태료	77,800	64,300	13,500	21.00
보조금	12,192,722	10,200,468	1,992,254	19.53
국고보조금등	5,224,136	4,042,363	1,181,773	29.23
국고보조금등	5,224,136	4,042,363	1,181,773	29.23
시·도비보조금등	6,968,586	6,158,105	810,481	13.16
시·도비보조금등	6,968,586	6,158,105	810,481	13.16

- 재원별 현황은 경상적 세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와 과징금, 과태료 수입의 4억6,33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219만4천원 감소하였음. 이는 보건 의료수수료 감액에 따른 것임.

보조금은 121억9,27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9,225만4천원, 19.53%로 증가하였음.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총 계	12,656,069	10,676,009	1,980,060
보건행정과	1,946,415	1,677,953	268,462
위생과	399,080	105,864	293,216
건강증진과	9,945,293	8,529,018	1,416,275
의약과	365,281	363,174	2,107

- 보건행정과는 국고보조금등의 주요감염병표본감시, 급성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증가와, 국가결핵관리사업, 에이즈 예방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2억6,846만2천원 증가한 19억4,641만5천원임.
- 위생과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2억9,321만6천원 증가한 3억9,908만원임.
- 건강증진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방문간호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체 14억1,627만5천원이 증가한 99억4,529만3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사용료수입인 관리비 수입(아현문화건강센터)과 국고보조금등 기금의 증액으로 210만7천원 증가한 3억6,528만1천원임.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0,250,832	100.00%	17,708,802	100.00 %	2,542,030	14.35
인건비	4,047,780	19.99%	3,456,284	19.52 %	591,496	17.11
물건비	1,546,489	7.64%	1,293,733	7.31 %	252,756	19.54
일반운영비	1,367,989	6.76%	1,127,213	6.37 %	240,776	21.36
여비	52,800	0.26%	39,600	0.22 %	13,200	33.33
업무추진비	72,300	0.36%	73,520	0.42 %	△1,220	△1.66
재료비	53,400	0.26%	53,400	0.30 %	0	0.00
경상이전	14,636,126	72.27%	12,839,385	72.50 %	1,796,741	13.99
일반보전금	695,270	3.43%	783,340	4.42 %	△88,070	△11.24
포상금	800	0.00%	800	0.00 %	0	0.00
배상금등	1,000	0.00%	1,000	0.01 %	0	0.00
민간이전	12,442,987	61.44%	10,779,372	60.87 %	1,663,615	15.43
자치단체등이전	1,071,425	5.29%	833,343	4.71 %	238,082	28.57
전출금	424,644	2.10%	441,530	2.49 %	△16,886	△3.82
자본지출	20,437	0.10%	119,400	0.67 %	△98,963	△82.88
자산취득비	20,437	0.10%	92,400	0.52 %	△71,963	△77.88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억5,08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203만원, 14.35%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17.11%,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21.36%와 여비 33.33%, 경상이전의 민간이전비 15.43%와 자치단체등이전비가 28.57% 증가함.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0,250,832	100.00%	17,708,802	100.00%	2,542,030	14.35
보건행정과	3,207,139	15.84%	2,518,332	14.22%	688,807	27.35
위생과	637,626	3.15%	224,650	1.27%	412,976	183.83
건강증진과	14,555,937	71.88%	12,926,343	72.99%	1,629,594	12.61
의약과	1,850,130	9.14%	2,039,477	11.52%	△189,347	△9.28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3,207,139	2,518,332	688,807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3,110,299	2,419,800	690,499
보건소 기능 강화	2,216,700	1,901,798	314,902
통합민원서비스	96,585	86,675	9,9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308	237,308	70,000
건강도시 조성	8,680	35,180	△26,500
암조기검진사업	399,868	276,132	123,736
정신보건사업	762,739	754,782	7,95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00,000	400,000	100,000
지역사회건강조사	69,920	69,920	0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10,000	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1,600	30,801	30,799
감염병 관리	893,599	518,002	375,597
감염병예방관리	190,226	9,400	180,826
방역소독	234,556	143,867	90,689
에이즈예방관리	220,845	169,219	51,626
급성 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1,500	1,500	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920	1,060	△140
국가결핵관리사업	238,162	185,566	52,596
결핵검진사업	7,390	7,390	0
행정운영경비	96,840	98,532	△1,692
기본경비	96,840	98,532	△1,692

- 보건행정과는 32억713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억8,880만7천원이 증액됨.
- 주요 증액 내역은 암조기검진사업의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1억1,754만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탁금’ 1억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관련 물품구매와 자가격리자 위생키트(마스크 등)지원 및 등기소포비’ 등 1억 8,082만6천원 증액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637,626	224,650	412,976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28,106	28,770	△664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28,106	28,770	△664
식품공중위생업신고 · 관리	16,506	17,170	△664
위생업소 지도점검	5,310	5,310	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90	6,290	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557,254	138,778	418,476
식품위생 관리	557,254	138,778	418,476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31,654	32,710	△1,056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525,600	106,068	419,532
행정운영경비	52,266	57,102	△4,836
기본경비	52,266	57,102	△4,836
기본경비	52,266	57,102	△4,836

- 위생과는 6억3,762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억1,297만6천원, 183.8% 증가됨.
- 주요 증가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2,033만2천원임.

3) 건강증진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증진과	14,555,937	12,926,343	1,629,594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12,280,136	10,915,206	1,364,930
생활건강관리	1,216,245	1,350,119	△133,874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50,000	250,000	0
건강증진사업	71,752	69,745	2,007
영양플러스사업	239,667	238,433	1,234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940	2,940	0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08,800	232,000	△23,2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47,998	247,998	0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6,950	45,000	31,950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58,569	64,061	△5,492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35,609	104,611	△69,002
싱겁게 먹는 배움터	22,000	22,000	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60	0	1,960
방문보건사업	1,899,700	1,479,878	419,822
재가암환자관리	12,000	12,000	0
마을건강센터 운영	30,368	38,368	△8,00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80,000	1,280,000	0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03,960	101,840	2,120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17,000	23,400	△6,400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50,800	21,570	29,23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5,000	2,700	2,30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400,572	0	400,572
모자보건관리	9,164,191	8,085,209	1,078,982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6,780	26,544	236
국가예방접종 실시	4,993,829	4,914,459	79,370
자체예방접종사업	129,910	132,910	△3,000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48,992	47,198	1,794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21,000	18,000	3,0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7,000	9,100	△2,100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160	98,000	△78,84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9,500	31,380	△1,880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2,840	3,800	△960
난임부부 지원	295,752	240,000	55,75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3,277	3,277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600	2,400	△80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5,340	52,000	△16,6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951,960	841,490	1,110,47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23,100	472,790	△49,69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6,000	5,200	800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19,520	19,520	0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732,145	732,145	0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74,841	371,996	△97,155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100,000	61,000	39,000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9,645	0	39,645
행정운영경비	2,275,801	2,011,137	264,664
인력운영비	2,189,528	1,918,805	270,723
인력운영비	264,224	260,676	3,548
인력운영비(방문간호사)	759,460	618,740	140,720
인력운영비(서울아기건강첫걸음)	208,273	193,621	14,652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957,571	845,768	111,803
기본경비	86,273	92,332	△6,059
기본경비	86,273	92,332	△6,059

- 건강증진과는 145억5,593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억2,959만4천원, 12.6% 증가됨.
- 주요 증가 내역은 방문보건사업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4억57만2천원, 모자보건관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억1,047만원, 인력운영비(방문간호사) 1억4,072만원,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1억1,180만3천원임.
- 주요 감소 내역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50만6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88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969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원임.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의약과	1,850,130	2,039,477	△189,347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1,463,043	1,694,894	△231,851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981,827	1,133,423	△151,596
아현문화건강센터	428,644	446,530	△17,886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97,480	138,495	△41,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300	87,300	0
의료기관 관리	7,247	7,247	0
의약품 조제·투약	4,980	4,980	0
치아건강관리	128,555	129,477	△922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94,286	139,099	△44,813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8,000	97,800	△29,800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2,260	15,520	△3,260
서강보건지소운영	53,075	66,975	△13,900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92,836	454,247	△61,411
건강검진	19,357	19,357	0
검사 및 검진사업	233,183	313,198	△80,01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60,000	44,400	15,600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8,190	6,190	2,000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사업	32,268	30,124	2,14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6,958	38,098	△1,140
응급의료관리	88,380	107,224	△18,844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79,200	98,879	△19,679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9,180	8,345	835
행정운영경비	387,087	344,583	42,504
인력운영비	312,725	269,590	43,135
인력운영비(심폐소생술 교육)	37,301	41,518	△4,217
인력운영비(아현건강증진센터)	148,363	156,737	△8,374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38,501	34,433	4,068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	88,560	36,902	51,658
기본경비	74,362	74,993	△631
기본경비	74,362	74,993	△631

- 의약과는 구 일반회계 예산의 0.28%인 18억 5,01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8,934만7천원이 감소됨.
- 주요 증가 내역은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서비스)’의 인건비 3,845만8천원임.
- 주요 감소 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 운영비 3,201만5천원,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2만7천원, ‘검사 및 검진사업’의 전년도 자산취득비 진단검사의학실 혈액학자동분석기 구입 완료로 8,001만5천원이 감소됨.

IV. 2021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㉑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㉓	지출 ㉔	증감 ㉕ = ㉓ - ㉔		
2,679,336	346,466	612,125	△265,659	2,413,677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3,025,802	2,615,583	410,219
세외수입	148,717	155,243	△6,526
경상적세외수입	148,717	155,243	△6,526
정수교부금수입	120,000	118,740	1,260
이자수입	28,717	36,503	△7,7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7,085	2,460,340	416,745
보전수입등	2,877,085	2,460,340	416,745
융자금원금수입	197,749	229,630	△31,881
예치금회수	2,679,336	2,230,710	448,626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지 출 합 계	3,025,802	2,615,583	410,219
식품의약안전	3,025,802	554,870	2,470,932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12,125	554,870	57,255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612,125	554,870	57,255
식품진흥기금 운용	612,125	554,870	57,255
재무활동	2,413,677	0	2,413,677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413,677	0	2,413,677
여유자금예치	2,413,677	2,060,713	352,964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수입예치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증가내역은 예치금회수금 4억4,862만6천원임.
-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의약안전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6억1,212만5천원,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에 24억1,367만7천원임.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활동의 여유자금예치 3억5,296만4천원과 식품진흥활동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 활동비 및 신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4,820만원임.

V. 검토결과

1. 검토의견

- 2021년도 예산안은 경기여건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은 일부 증가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은 확대됨.
-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 대규모 주요투자사업·공약사업 등 본격 추진에 따른 자본지출이 증가되었음.
-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6억5,60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억7,600만9천원 대비 18.55%, 19억8,006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세입 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아현문화건강센터 관리비 수입’, ‘보건의료수수료’로 3억6,400만7천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공중위생, 축산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과징금 및 과태료 9,934만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인력운영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으로 121억9,272만2천원임.
- 금번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4,203만원 증가한 202억5,083만2천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사업비가 72.51% 대폭 증가와 동시에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관리, 식품위생 관리 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사

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기 사업의 인력 및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어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고려됨으로 업무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여 인력운영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서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지출계획 대부분을 위생감시 등의 기능 유지에 국한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지출을 위해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기금의 합·목적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아울러, 보건소 예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것임을 직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시비매칭 사업일지라도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노력과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체계 증진 방안이 필요할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보건소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편성사유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60	0	1,960	국비:구비=50:50 매칭사업으 로 지역보건사업 우수건강지 표 발굴 및 근거기반의 성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